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16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 현・최민희・권향엽 윤건영・진성준・김 윤 조인철・이주희・김우영 이성윤・이훈기・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른바 “인공지능 에이전트”)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위임 권한을 벗어난 작동, 외부 시스템 연계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위험 등이 동반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편,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정부의 시책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도구 연계로 인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권한을 벗어난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감독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하여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제7호의 시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라 한다)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2.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와 연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의 평가·관리
3.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②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① ----------.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신 설>	7.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제7호의 시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

	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라 한다)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2.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와 연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의 평가·관리 3.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②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

	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